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¹⁾

Cyber Violence and Hikikomori in Japanese Youth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진달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이미지, 음성, 전자 우편, 다양한 멀티미디어 개체를 통하여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²⁾.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³⁾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도 7.3%(2차 조사)에서 2013년 9.7%(2차 조사), 2014년 9.3%(1차 조사)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폭력 피해는 2012년 8.5%(2차 조사), 2013년 1.9%(2차 조사), 2014년 1.4%(1차 조사)로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휴대 전화나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학교 내의 대인관계 문제가 인터넷상으로 확대되고 있다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인터넷 따돌림 실태 조사⁵⁾에 따르면, 전체 조사 응답자의 27.7%가 최근 3개월 간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피해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온라인 유출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게임을 통한 괴롭힘 10.2%, 카카오톡 친구 신청 거부 또는 대화방에서 제외가 7.5%, 채팅 5.8%, 소셜네트워크서비스 3.4%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기존의 학교폭력과 달리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며, 사이버폭력이 학교 폭력과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0114-14-1016,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및 적시대응기술 개발 사업]과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2014. 10. 12 ~ 10. 16'기간 동안 일본 동경 출장(출장자: 송태민, 진달래, 이연희, 정진욱)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임을 밝힘.

2) 오인수(2014).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처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슈리포트.

3)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4). 학교폭력실태조사.

4)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사이버bullying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학교 인터넷 따돌림(School Cyberbullying) 실태와 대책방안, 정책토론회자료집14-S42

연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⁶⁾.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성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카카오톡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일명 ‘카 따기’ 현상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들이 SNS상에서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전파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24시간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휴대폰이나 E-mail, 인터넷 상의 게시판 등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폭력이 주목 받고 있다⁸⁾.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매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임을 감안할 때 사이버폭력 현상은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 세대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오프라인 상에서 대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그룹을 만들어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사이버폭력 현상이 증가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히키코모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의식에 관한 조사(히키코모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 추정 인구는 69.6만 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직

장 및 취업 문제가 각각 23.7%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20.3%, 인간관계 문제와 대학불합격 문제가 각각 11.9% 순으로 나타났다⁹⁾. 사회적 히키코모리의 상담 사례 중 히키코모리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의 나이가 19세에서 24세에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13세에서 15세 청소년 순으로 등교거부 형태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본고는 일본의 지역사회에서의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와 유해 사이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제도 현황과 히키코모리 등의 위기청소년의 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필터링 서비스 현황

일본 내각부의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 조사¹¹⁾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초등학생 13.6%, 중학생 47.4%, 고등학생 82.8%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청소년

6) 정한라(2013).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7) 동아일보(2013.03.07.) ‘왕따에 떨던 10대 이젠 카따 공포’ 기사

8) Ono Atsushi, Saito Fuyuki(2008). Education psychological review about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cyber bullying. *The journal of Senri Kinran University*, 5, pp.35~47

9)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5honpen/b1_04_02.html

10) Kyoto prefecture(2014.12.22. 검색), http://www.pref.kyoto.jp/health/health/health07_f.html

11) 内閣府(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2014.03) www8.cao.go.jp/youth/youth-harm/chousa/h25/net-jittai/pdf-index.html

매체 이용 실태 조사¹²⁾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72.2%, 중학생 86.2%, 고등학생은 84.9% 가 스마트폰을 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높았으며,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일본 청소년은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을 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2.0%, 중학생은 32.6%, 고등학생은 52.2%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C를 통하여 인터넷을 2시간 이상 접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7%, 중학생 13.6%, 고등학생이 15.7% 비율로 나타나 인터넷 보다 스마트폰이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시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동경도청 청소년 치안 대책 종합 대책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한 인터넷 정보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구입 시 보호자에게 물을 만들어 이용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 후에 구매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휴대 전화의 보급에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통한 집단 괴롭힘, 스톱 메일, 유해 사이트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이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청

소년의 경우 성매매 범죄 피해, 약물 중독, 왕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법 제6조¹³⁾에 의거하여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필터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자의 책무와 역할로 여기고 있다(그림 1 참조).

필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이 유해환경 사이트를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가입 시 필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유해환경에 노출 되지 않도록 설정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필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하였을 경우 보호자에게 ‘필터링 서비스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필터링 서비스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서비스에서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8월 청소년 문제를 중점으로 담당하는 ‘청소년 육성 종합 대책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아동 및 청소년으로부터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e-규칙 강좌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가정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충해 나아가고 있다.

2007년 1월에 동경 아동 청소년 문제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위험 요인에 대한 문제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치안대책 본부, 생

12)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13)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법: 18세 미만의 아이가 휴대전화, PHS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보호자는 PHS사업자에게 구매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가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유해한 웹사이트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동경의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유해정보 차단 필터링 서비스



자료: 東京都 青少年·生活對策本部統合對策部(平成26年 2月 發行 資料)

활문화국, 보건복지국, 병원경영본부, 산업노동국, 교육청, 경시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대책 본부는 한명의 좌장과 각국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문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

소년 육성을 위한 동경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책이다. 각 문제별 책임 및 관계 기관은 <표 1>과 같다. 특히,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 대책 치안 본부,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병원경영본부, 경시청에서 연계하여 회복 프로그램을 지

표 1. 동경의 청소년 문제 대책 책임 및 관계 기관

분류	책임 및 관계 기관
어린이 안전대책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산업노동국, 교육청, 경찰청
비행청소년 회복지원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보건복지국, 산업노동국,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보건복지국, 병원경영본부, 산업노동국, 교육청, 경찰청
아동학대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보건복지국, 생활문화국, 병원경영본부, 교육청, 경찰청
약물남용 방지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보건복지국, 생활문화국, 병원경영본부, 산업노동국, 교육청, 경찰청
에이즈 대책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보건복지국, 생활문화국, 병원경영본부, 산업노동국, 교육청,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준비국
식생활 교육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산업노동국, 교육청
왕따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병원경영본부, 경시청
가정교육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준비국, 산업노동국, 건설국, 교육청
인터넷 및 휴대폰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총무국,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교육청, 경찰청

자료: 東京都 青少年 (2014), 東京都の青少年2014-施策のあらまし(平成26年度版)

원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방지를 위해서도 청소년 치안대책 본부, 총무성, 생활문화국, 보건복지국, 교육청, 경찰청이 연계되어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Help Desk(www.tokyohelpdesk.jp)¹⁴⁾」포털을 통하여 유해환경 사례별 대처 방안,

인터넷 법률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화상담, E-mail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전체 상담 건수 2,231건 중 청소년을 당사자로 하는 상담 건수는 1,743건으로 78.1%가 청소년 상담 건수로 조사되었다¹⁵⁾. 청소년 상담 건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상담 사례는 ‘가공 청구’건이 722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상담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상담 사례는 ‘교제’가

표 2. 2013년 청소년 육성 종합 대책 추진본부 청소년 유해정보 상담 사례별 현황

	PC	휴대전화	스마트폰	PHS	휴대게임기	기타	불명	대상밖	합계
피싱메일·문자(가공청구)	60	21	534		5	136	16		772
경매		1							1
쇼핑	1	1							2
온라인게임	2		1				2		5
사이버왕따	4	2	24				12		42
명예훼손	3	4	20	1		3	18		49
스팸		11	58						69
체인메일	4	3	3						10
유해사이트	7	1	18		17		3		46
부정한 접근	1		3						4
저작권법위반		1							1
의존	12	1	10			8			31
교제	3	14	74		3	14	2		110
삭제방법	17	4	111		4	14	23		173
요금 관계	2	6	14		2	2	1		27
대상밖의 상담	4	14	17			2		38	75
기타(의미불명)	34	28	177		11	32	13	31	326
합계	154	112	1,064	1	42	211	90	69	1,743

자료: 東京都 年次報告, 平成25年度, 東京子どもネット・ケータイヘルプデスクこたエール

14) Help desk는 동경도 청소년부에서 개설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2009년 7월에 오픈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이 안고 있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문제에 대하여 아동을 비롯한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이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위험수위가 높을 경우 상담기관, 학교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5) http://www.seisyounen-chian.metro.tokyo.jp/seisyounen/01_shisaku_1_2_2.html#sec4

173건이 상담되었다. 상담 매체별로는 스마트폰을 통한 상담이 전체 1,064건, PC를 통한 상담이 154건, 휴대전화를 통한 상담이 112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 일본의 청소년 히키코모리 및 비행 청소년 대응방안

일본에서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사회적 참여가 협소해지고, 취업이나 취학 등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택 이외에서의 생활을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¹⁶⁾. 히키코모리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경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조치를 상담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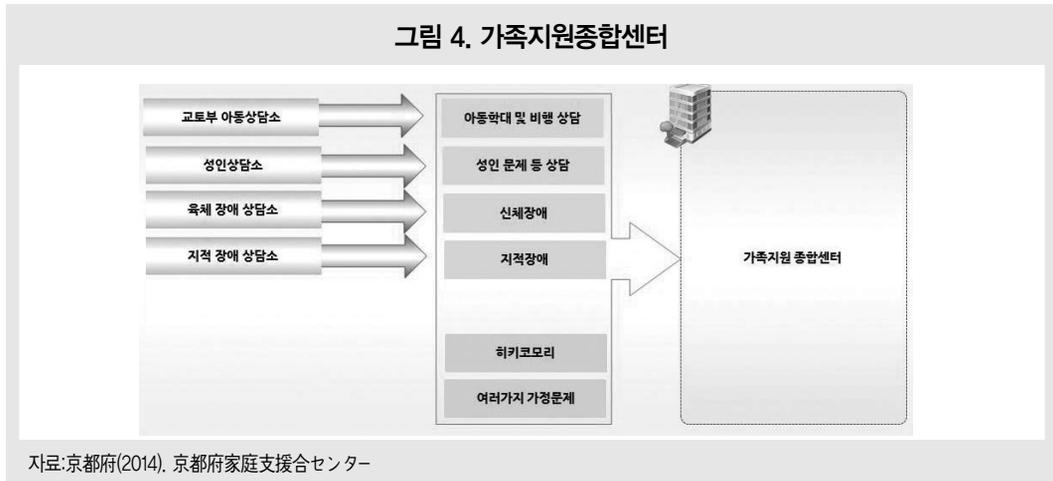
동경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종합상담소인 히키코모리 지원 포털「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hikikomori-tokyo.jp)」은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후 15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을 시 방문 상담이 가능

그림 2. 동경의 청소년 히키코모리 상담 지원 포털



자료: 일본 은둔형 외톨이 서포트 포털(<http://www.hikikomori-tokyo.jp>), [2014.10.22, 검색]

16) 동경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웹(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http://www.hikikomori-tokyo.jp/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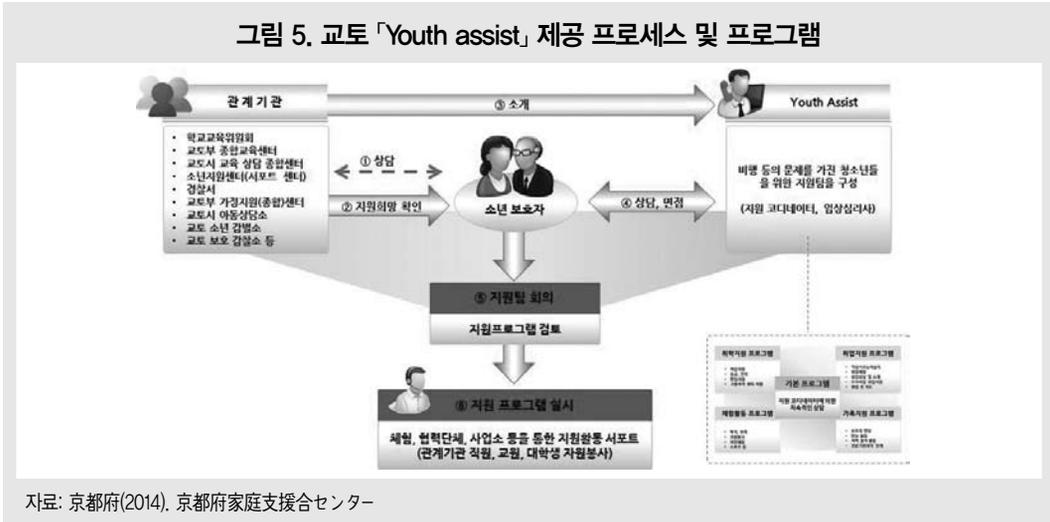


생각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사회참여 준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스스로 가정 이외의 활동장소에 정기적으로 외출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사회 체험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지원자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카운슬링 하여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히키코모리를 돕기 위하여 관련 연계기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진행 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교토에서도 동경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비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정지원종합센터」를 설치하였다. 가정지원종합센터는 핵가족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히키코모리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시 전문가가 투입되어 원스톱으로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가족지원종합센터에서는 학교교육위원회, 종합 교육센터, 상담센터, 소년지원센터, 경찰서,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된 「Youth assist」를 만들어 비행, 히키코모리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는 학교와 경찰,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개 받은 소년, 가정재판소에서 송치되어 비행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중학생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및 상담요청이 들어온 청소년들에 한해서 해당 청소년의 비행요인 및 환경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회의를 거쳐 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Youth Assist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을 통한 취학지원(학습지원, 등교 및 진학, 편입지원, 고졸자격 취득 지원), 취업 지원(직업 기초 능력

그림 5. 교토 「Youth assist」 제공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자료: 京都市(2014). 京都市家庭支援センター

습득 교육, 취업 체험, 취업 상담 및 소개, 임시 취업, 취업 후 지도사항 권고), 체험 활동 프로그램(복지 및 보육, 자원 봉사 활동, 자연 체험, 스포츠 등의 활동), 가족지원(보호자 면담, 만남 활동, 지역 참가 활동,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이 있으며, Youth assist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은 [그림 5]와 같다.

교토부에서는 직친(織親)제도¹⁷⁾를 두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토부에서 사회적 히키코모리 구내 추계 인원이 1만 4천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직친제도는 학습서포트, 상담 및 치료, 직업소개 및 부모회 활동 등을 통하여 히키코모리가 스스로 재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며, 교토부 발달장애 지원센터, 정신보건 종합센터, 교육상담종합지원센터, 아동상담센터, 보건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회복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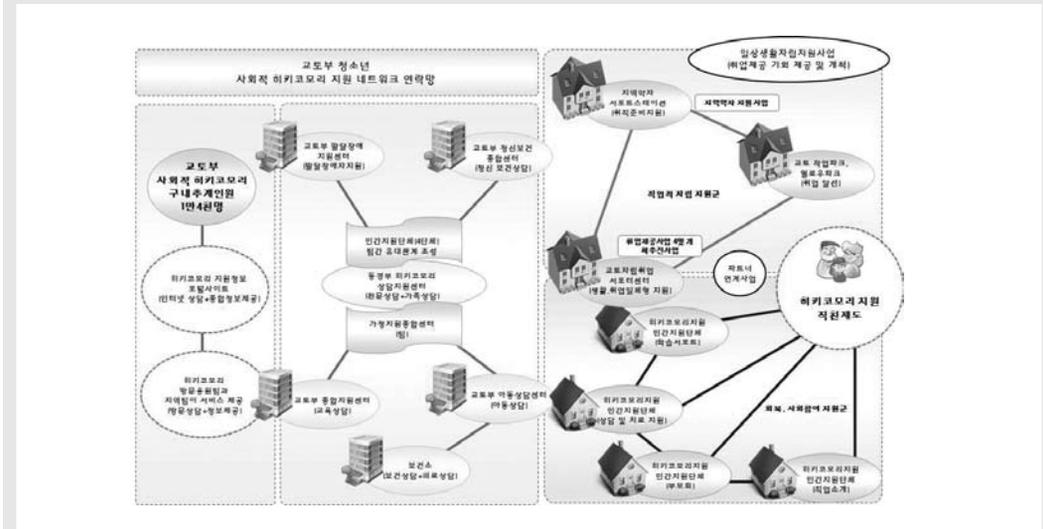
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취업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재기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데에는 부내 124개 사업소의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에게 1일에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체험을 통하여 자존감 회복 및 회복 이후의 사회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고취 시키는데 있다(그림 6 참조).

4. 나가며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 중심의 대처 방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하여, KT에서는 중독예방알리미,

17) 고아나 신체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되어 돌보며 생활지도 및 직업 지도를 돕는 사람

그림 6. 교토 청소년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 단계



자료: 京都市(2014). 京都市家庭支援センター

SKT에서는 스마트 아이코치 어플리케이션을 부모 앱과 자녀앱을, LG U+에서는 자녀폰 지킴 등의 아동·청소년의 유해 정보 차단 및 사이버 폭력 감지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한 웹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접근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자녀의 중독성 모바일 게임사용과 음란 및 사양성 웹사이트 접근을 원격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하면 부모에게 공지 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다양한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언어폭력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메시지 필터링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랙스톤이 개발한 모바일 가디언, 위그시스템즈가 개발한 스쿨보안관, 스마일맘

이 개발한 스마트 보디가드 등이 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욕설, 비방과 비슷한 문자가 수신되었을 경우 부모에게 이메일로 실시간 내용이 전달되고 있지만, 통신업자의 필터링 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 유해한 정보에 접근이 쉽고, 사이버 폭력의 주요 도구로서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카카오톡을 포함한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욕설, 따돌림, 비방이 심각한 수준이다.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예방 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1. 동경도 왕따 방지 대책 추진조례안

(목적)

제1조 이 조례안은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동경도(이하, 都(도)라 명명), 학교설립자,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할과 동시에 동경도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하고 왕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안에서 왕따(いじめ)는 아동 및 학교에 재학중인 학동경도 왕따 생 등이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에게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을 의미하여 이러한 행동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왕따방지 등」라 일컬음은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지매의 조기발견 및 대처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학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小學校),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며, 도시, 구시 마을,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쇼와¹⁸⁾ 24년 법률 제270호),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아동 등」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보호자」는 양육을 하는 자(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은 왕따 아동의 생활, 심신의 안전한 성장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모든 아동이 안심하고 학습 또는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과 밖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왕따방지를 위한 대책은 아동의 생활, 심신을 보호하여 아동이 왕따에서 확실히 보호되게 하고, 왕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고 왕따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에서 왕따방지를 위한 대책은 왕따 조치가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조직으로 임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왕따방지 대책은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구시 마을, 지역주민, 가정과 기타 관계자의 연계 하에 사회 전체에서 왕따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한다.

(왕따(いじめ) 금지)

제4조 아동 등은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된다.

(동경도의 책무)

18) 쇼와: 일본 서기 1926년부터 1989년까지의 일본의 연호

제5조 동경도는 제3조에 규정하는 기본 이념(이하 기본 이념)에 따라 구시 마을 및 왕따(いじめ) 방지에 관계하는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책무를 가진다.

(학교 설립자의 의무)

제6조 학교설립자는 기본 이념에 따라 학교에서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책무를 가진다.

(학교 및 학교교직원의 책무)

제7조 학교 및 학교교직원은 기본이념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재적하는 아동 등의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를 도모하여 학교에서 왕따(いじめ)를 미연에 방지하고 왕따 조기 발견에 힘을 쓰고, 학교 내 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책무를 지닌다.

(보호자의 책무)

제8조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왕따(いじめ)가 아동의 생명,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보호자는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규범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 등이 왕따를 당한 경우에 적절하게 해당 아동을 왕따에서 보호하여

야 한다

3. 보호자는 동경도, 학교설립자 및 그 설립하는 학교가 왕따방지 등에 대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경도의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 추진 기본방침)

제9조 동경도는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동경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정한다.

2. 기본방침은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법(헤세이 25년 법률 제71호, 이하 법)」 제 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으로 한다.

(동경도의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

제10조 왕따(いじめ)방지에 관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도경도 교육 위원회, 동경도 아동 상담센터, 동경 법무국, 경시청 관계자로 구성된 도경도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① 구시 마을 또는 학교에서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

② 왕따(いじめ) 방지에 관계하는 기관 및 단체

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왕따(いじめ)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 교육 위원회 규칙명의로 정한다.

(동경도 교육 위원회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 위원회)

제11조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동경도에서의 왕따(いじめ) 방지 등 대책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 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경교육위원회 부속 기관으로 동경교육위원회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명명)를 둔다

2. 대책위원회에서는 동경교육위원회 자문에 응하면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 조사 심의에 답신하여야 하다.

3. 대책위원회는 왕따(いじめ) 방지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동경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대책위원회는 도립학교(동경도립학교설치조례(쇼와39년 동경조례 제113호) 제1조에 규정하는 돌비학교를 말함)에서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대 사태(이하 중대사태라 명명)이 발생한 경우, 규정하는 조사(이하 법 제28조 조사라 명명)를 하며 이 결과를 동경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5. 대책위원회는 학계전문가, 법률, 심리, 복지 등에 관한 전문가를 동경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다만 연임은 막지

않는다.

7.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대책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교육위원회 규칙을 따른다.

(동경도 왕따(いじめ) 문제 조사 위원회)

제12조 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보고에 관한 중대 사태 대처 또는 중대한 사태와 동등한 사태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30조 2항 또는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 기관으로서 동경도 왕따(いじめ) 문제 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명명)을 둘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자문에 따라 도시 혹은 학교 법인에 따라 법 제28조 조사결과에 대해 법제30조2항 또는 제31조 2항에 규정하는 조사(이하 재조사라 명명)를 한다.

3. 학교, 학교설립관계자는 재조사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조사위원회는 학계전문가, 법률, 심리, 복지 등에 관한 전문가 등이 보고에 관한 법제28조 조사한 조직의 구성원 이외의 것 중에서 지사가 임명하는 조직을 10명 내외로 조직한다.

5. 위원의 임기는 지사가 임명하여 재조사가 종료할때까지로 한다.

6. 조사위원회 설치 시 지사는 이것을 동경도의 회에 보고한다.

7.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제13조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외에 조례의 시행 권한이 필요한 사항은 지사 또는 동경도 교육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부터 제12조항까지는 헤세이 26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매 사실을 알려야 함. 아이가 유해한 정보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서비스 이용해야 함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유해한 웹사이트도 아이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전자 소비자 계약법

○ 인터넷 조작법 미숙으로 구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잘못 구매한 경우 소비자 계약 법에 따라 실수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음

4. 부정한 액세스 금지 법

○ 컴퓨터 보안이 허술하여 타인의 비밀번호나 ID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부록2. 일본의 인터넷 법률

1. 인터넷을 통하여 이성을 소개하는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 법률(만남 사이트 규제 법)

○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사랑, 돈을 목적으로 한 원조 교제 대상을 모집 하는 것은 범죄행위임. 이 경우 유혹한 아동도 처벌의 대상이 됨

2.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위한 법률(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법)

○ 18세 미만의 아이가 휴대전화, PHS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보호자는 PHS 사업자에게 이 구

5. 저작권법

○ 음악CD, 비디오, 책, 만화, 비디오 게임, 사진, TV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저작 권리가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쇄하여 배포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음.

○ 단,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50년 이 지나면 저작권은 사라짐.

6.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 의무를 정한 법률이며, 사업자는 개인 정보 이용 목적을 공지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금지함.

○ 또한, 데이터베이스화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7.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① 보호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② 18세 미만 청소년이 휴대 전화 등을 가입하거나 사용할 때 유해정보 열람을 방지하는 필

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휴대전화 판매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이용에 따른 위험과 과도한 인터넷 이용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 보호자는 예방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연령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나 이용 가능한 기능을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